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

외부강의 등 신고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아주대학교

외부강의 신고서 등록 및 신청

외부강의 신고서 메뉴 : AMS-행정-교원-외부강의신고

외부강의등신고

행정정보 > 교원 > 외부강의등신고관리 > 외부강의등신고 > 기본요청 > 메모 > AMS2서비스요청 > 화면인쇄 > 도움말

작성일자 2018-01-01 ~ 2018-12-31

외부강의등신고 현황

<input type="checkbox"/>	관리번호	강의일자	기관명	작성일자	최종수정일자	신청자	초과사례금여부
<input type="checkbox"/>	2018080016	2018-08-10	테스트12323	2018-08-10	2018-08-29	박동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수:1]

①

추가

저장

③

②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자	교직원명	소속	정보시스템팀	첨부파일	파일추가	파일삭제
	직위(직급)	연락처	1111111111	NO	파일명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테스트3			
	담당부서(담당자)	테스트21				
외부강의등 주제	테스트5					
장소	테스트6					
일시	날짜	2018-08-10				
	시간	10:00 ~ 11:00				
사례금	총액	200,000원				
	(교통비 · 숙박비 · 식비)					
초과사례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초과사례금여부	총액				
초과사례금 반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환여부	반환금액				
	반환방법	테스트7				

반환일 2018-08-12 + 증빙서류 첨부

- 외부강의 일시, 주제, 금액 등 입력
 → 사전신고 의무: 금액 등 일부 내용을 모르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 입력

- 금액 등 일부 내용을 추후 알게 된 경우 기 작성한 외부강의 신고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외부강의 사전 신고 준수

외부강의는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

다만, 일부사항 사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 이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 사전 신고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26조 2항)

사전신고 위반시 주의 화면

[건수:2]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자	교직원명	박동욱
	직위(직급)	
요청인	기관명	기관명
	담당부서(담당자)	담당부서명(담당자명)
외부강의등 주제	강의주제내용	
장소	장소위치	
일시	날짜	2018-08-30 ~
	시간	10:00 ~ 11:00
사례금	총액	500,000 원 (※ 1회 평균 대가
	(교통비 · 숙박비 · 식비(10,000 원 별도))	(※

아주대학교 AIMS2

i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신고시 청탁금지법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의거 외부강의등은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③ 공직자들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사전당시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 일부사항을 알수 없는 경우 일단 사전신고를 하시고 추가사항은 해당사항을 알게 된 이후 지체없이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확인